

[별표 5의2] <신설 2012.5.17>

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, 주기 및 방법(제18조의2제4항 관련)

1. 탁도 등의 기준

가. 탁도: 매월 측정된 시료 수의 95퍼센트 이상이 0.3NTU(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0.5NTU) 이하이고,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NTU 이하일 것

나. 불활성화비(병원성미생물이 소독에 의하여 사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): 1 이상일 것

2. 검사의 항목, 주기 및 방법

가. 탁도

1) 검사 주기: 4시간 간격으로 1일 6회

2) 검사 방법: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

나. 불활성화비

1) 검사 항목: 잔류소독제농도, 수소이온농도(pH), 수온

2) 검사 주기

가) 잔류소독제농도: 연속측정장치로 측정

나) 수소이온농도 및 수온: 1일 1회 이상

3) 검사 방법: 정수지 유출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

3. 제2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바이러스,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의 불활성화비 계산 방법과 제거율 계산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